

-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-
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21. 8. 26.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 : 2021. 8. 27.
- 상정일자 :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9. 6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세무과장 안 상 옥)

가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을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·시행('21.6.8.)
-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업을 금지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감면대상
 -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금지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

※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

○ 감면내용

- 감면세목 : 재산세(건축물 및 토지)

- 감면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

- 감 면 율

▶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

4%(지방세법 §111①2가목) → 0.25%(지방세법 §111①2다목)

▶ 토지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별도합산으로 세액계산 후 차액 감면

4%(지방세법 §111①1다목) - (지방세법 §111①1나목) : 감면

- 감면제외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2호를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제외

※ 위반 적용기간 : 2021. 6. 1. ~ 2021. 12. 31.

- (중복감면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

- (감면예상액) 54백만원 정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재산세 감면			비 고
	합 계	건축물	토 지	
유흥주점(5개소)	54	14	40	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-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2021년 6월 8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,
- 법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제1항제3호에 의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감면하기 위해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